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23호 2019. 07. 18.(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167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고시 -----1
- 사천시 고시 제17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6
- 사천시 고시 제17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7
- 사천시 고시 제17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8
- 사천시 고시 제17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9
- 사천시 고시 제17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10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855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11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23호

사천시 고시 제2019-167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천시 죽림동 및 송포동 일원 「남양동 일원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제1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사 천 시 장

1. 인가내용

시 설 의 명 칭	남양동 일원 하수도 설치사업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시행자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성 명	사천시장(하수도사업소장)
사 업 목 적	주거환경 개선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남 사천시 죽림동 및 송포동 일원 ○ 면적 : 1.88ha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종류 : 「하수도법」 제2조8호의 분류식하수관거 ○ 명칭 : 남양동 일원 하수도 설치사업 ○ 용량 : 하수관로 L=300m, 배수설비 24개소	
예정 하수처리구역	삼천포처리구역	
사 업 시 행 기 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사 천 시 공 보

제623호

2.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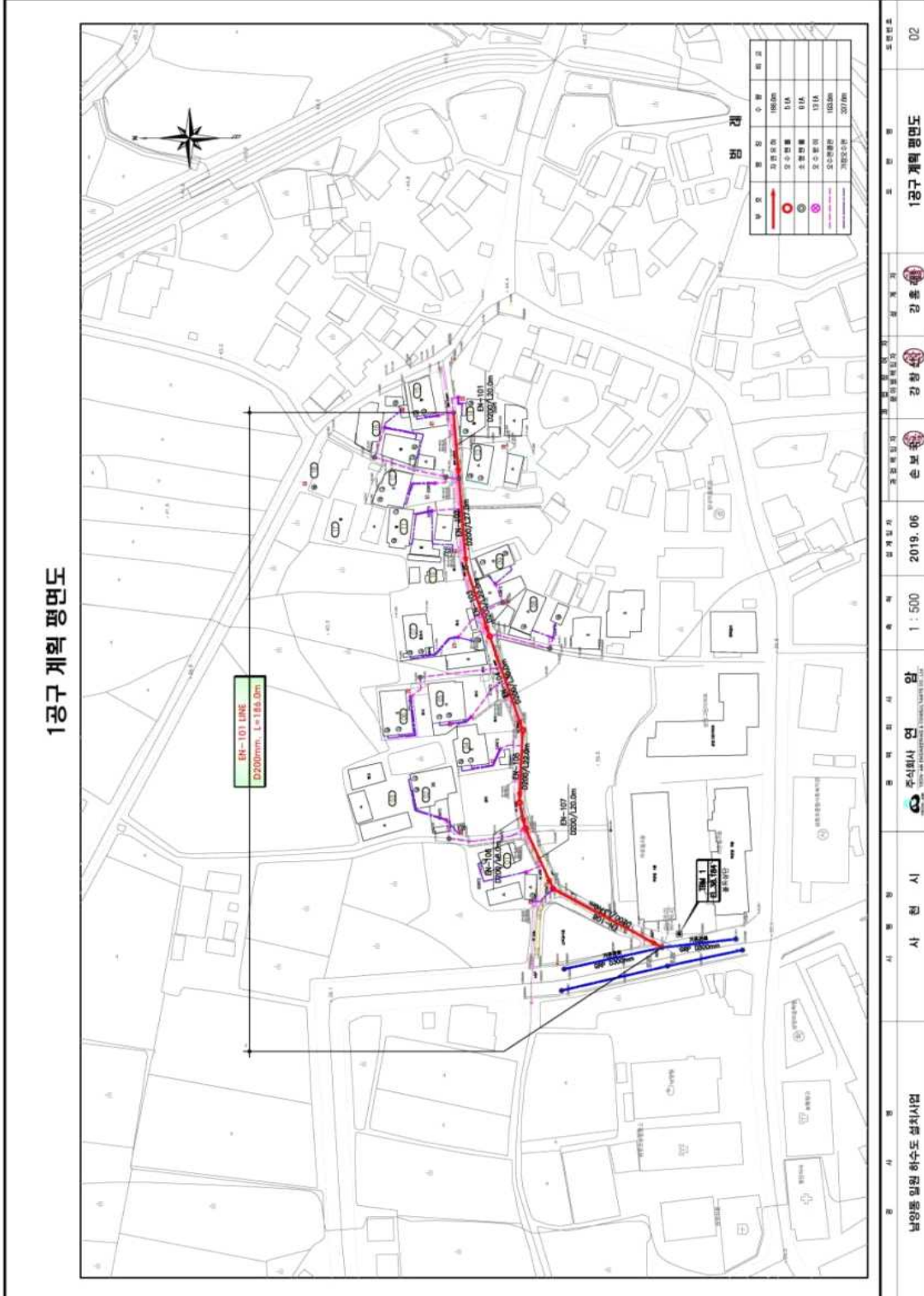
소재지	부동산의 표시			시설면적 (㎡)	실제 이용현황	소유자	용도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합계				57.0				
소계				57.0				
죽림동	607-18	도	492	1.0	도로	사천시	하수관매설	
	607-5	도	31	2.0		국토교통부		
	608-4	도	69	4.0		국토교통부		
	608-3	도	40	1.0		국토교통부		
	1073	구	1,705	20.0		국토교통부		
	608-1	답	1,871	3.0		정대봉		
	601-2	대	592	1.0		한동권 외 1인		
	601-1	대	453	1.0		이주환		
	618-2	대	354	1.0		차지은		
송포동	875-1	도	4,258	1.0	사천시			
	1498-9	도	30	1.0	국토교통부			
	885-1	도	3,058	16.0	사천시			
	1497-5	구	13	1.0	국토교통부			
	882-1	도	2,707	4.0	사천시			

3.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055-831-55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 623 호

□ 계획평면도(1공구-임내마을)



사 천 시 공 보

제623호

□ 위치도 및 현황



사 천 시 공 보

제623호

사천시 고시 제2019-17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07. 18.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9 - 12호
2. 점용·사용 승인 연월일 : 2019년 7월 03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를 통해 어항내 접안시설 확보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32-144
5. 점용·사용의 면적 : 1,491㎡(직접: 78, 간접:1,413)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9.07.02.~2034.07.01.(15년간)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시 공 보

제623호

사천시 고시 제2019-17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07. 18.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9 - 13
2. 점용·사용 승인 연월일 : 2019년 7월 03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를 통해 어항내 접안시설 확보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용현면 선전리 984-3
5. 점용·사용의 면적 : 1,553㎡(직접: 75, 간접:1,478)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9.07.02.~2034.07.01.(15년간)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시 공 보

제623호

사천시 고시 제2019-17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07. 18.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9 - 14
2. 점용·사용 승인 연월일 : 2019년 7월 03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를 통해 어항내 접안시설 확보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마도동 151-21
5. 점용·사용의 면적 : 590㎡(직접: 85, 간접:505)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9.07.02.~2034.07.01.(15년간)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시 공 보

제623호

사천시 고시 제2019-17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07. 18.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9-12호 (2019. 07. 02.)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32-144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19-8호
 - 공사기간 : 2019. 07. 04. ~ 2019. 09. 21.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19. 07. 04.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23호

사천시 고시 제2019-17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07. 18.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9-13호 (2019. 07. 02.)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984-3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19-9호
 - 공사기간 : 2019. 07. 04. ~ 2019. 09. 29.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19. 07. 04.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23호

사천시 공고 제2019-855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 7. 15.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 7. 15. ~ 2019. 7. 30.(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54루5629	A7	김*훈	2019. 7. 15.	소유자 요청(불명자 운행)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